2025년 3월 6일 개정 승인일자 : 2025년 3월 4일 승인번호 : 자동차25-43003-1-02

KB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 KB 손해보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KB스마트 안내 수신 동의'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3 제1조 용어의 정의 | 3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 5 제2편 자동차보험에 보기되었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3
제1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 5
제2편 자동차보험의 구성 | 5
제1장 배상책임 | 6
제1장 배상책임 | 6
제1장 배상책임 | 6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6
제4조 피보험자 | 6
제4조 고보험자 | 6
제4조 고보험자 | 6
제4조 고보험자 | 6
제4조 보상하는 손해 | 6
제4조 보상하는 손해 | 6
제4조 보상하는 손해 | 6
제4조 고보험자 | 6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7
제3조 교보험자 개발적용 | 7
제10조 지급보험금의 제산 | 8
제조음 유판인무면원전 또는 샤반생시의조차위 만든 사반관점 시대는 등 유판인 보장증목 | 9
제1절 자기산체사고 | 9
제1조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0
제1조조 지급보험금의 제산 | 10
제1조조 지급보험금의 제산 | 10
제1조조 고보험금의 경난 | 11
제1명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0
제1조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1
제13전 보험금의 등 생기한 수 있는 경우 | 13
제1장 교보험금을 청구 | 13
제1장 교보험금을 청구 | 13
제1장 교보험금을 청구 | 13
제1조조 전취 절차 및 유의 사항 | 13
제2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3
제2조 전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3
제2조조 제출 서류 | 13
제2조조 전금 절차 및 유의 사항 | 14
제2조조 자기급금의 지급 | 14
제2조조 전기 급리 | 15
제3장 보험금의 분담 | 16
제3조로 보험금의 분담 | 16
제3조로 보험금의 보답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점로 보험계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점로 보험계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점로 보험계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점로 보험계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조로 보험계약의 성립 | 17
제3조로 보험기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조로 보험기약의 성립 | 17
제4편 일반사항 | 17
제3조로 보험기약의 성립 | 18
제3조로 보험기약의 성립 | 19
제3조로 보험기약의 성립 | 19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9 제4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19 제41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19 제42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 19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0 제43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20 제44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20 제45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21 제46조 보험계약의 취소 | 21 제46조 보험계약의 취소 | 21 제48조 보험계약의 호력 상실 | 21 제48조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21 제48조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해지 | 22 제48조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해지 | 22 제48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22 제48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22 제50조 보험료의 환급 등 | 23 제4장 그 밖의 사항 | 24 제51조 약관의 해석 | 24 제51조 약관의 해석 | 24 제53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24 제53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24 제53조 피보험가동차 등에 대한 조사 | 24 제55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24 제55조 보험성기행위 금지 | 24 제55조 보험성기행위 금지 | 24 제56조 분쟁의 조정 | 24 제56조 관광의 조정 | 24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

- 가 피보험사에 내한 보상색임이나 피해사에 내한 손해배상색임을 확성하기 선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 허의 효력이 외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경우 교육하나[다 것을 포함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 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

 - -14-1-1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표」나 공제계약2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표」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
- 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 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이 가지 한 사용자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사용자에 역동되는 사용자공원 의 「대안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 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영약공성사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버게(전이나 고 속도로통행료단말)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다. 부속기계장차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 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 88 - 827 치를 말합니다.
- 1) 도로교통법 제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조에 따른 술에 추한 상태 외에 괴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 마 및 항정신성으약품과 그 뷔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뷔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 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 제금을 자급하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일반텍사운송사업자가 전국택시 공제조합과 체결한 계약
- 3)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4) 정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고속도로통행로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피스 단말기)

- 3 -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자)제4조소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자)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발칙) 및 제148조(일건별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항: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공주속정에 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 포함합니다.
- 고 마입하다. 13. **피보점**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는 기에 되답하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 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범자(이기를 기억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성자: 모임증권에 기재된 사랑자를 될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환)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
 - 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7)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8)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합니다.9)
- :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한다
- 18. 대체폐차 :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
- 6)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함께 살며 생 계를 같이 하는 남녀관계
- 7)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다지켓 \cdot 팬츠 \cdot 부츠 등 이와 유시한 일반의류는 제오
- 8)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9) 예: 휴[전화]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O) 플레이어 M3 플레이어 카네트테 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시전 휴대용라다오, 핸드백 서류기방 골프채 등

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 당시군구시합 제12조의 #당에 되면 구도메우구원의 당당시시에 따다 전 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 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19.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 보험가액

- . 보임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 21. 마약 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있는 사동사보유사는 '내언배장'」, '내언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내전배장'」, '나전배장'」, '나전배장'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근 눈에글 보증
邞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대인배상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대엔바상피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다다 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 경우에 보상
나.「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1)}$ 경우에 보상
다.「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기) 그룹 기계 한합니다. 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0) 자동차손해배산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 사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이 가입하여가 한다. 이 가입하여가 한다. 이 말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회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기업하여야 한다.

- 5 -

<예 시>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times 특약요율 \times 가입자특성요율 \times 특별요율 x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분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 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5. 우저피보험자
5. 우저피보험자
5. 우저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 자가 보험호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 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자급한 다음 자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표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표」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2. 언국씨도남시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4. 시중비포함시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금이다 내가들 얻고 피보검사동사들 사용한 때에 정신 사고로 인한 논에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피」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나음 중 어느 아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나진 경우에는 '내인배장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소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증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중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 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오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프라보기의 기본되고 보려되고 되었다. 다른 교내소화의 인보에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프라보기의 기본되고 보려되고 되었다.

-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된 소사품에 안아け 피에서 1인당 200만원의 안노에서 일세 온아를 모양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포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봉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 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11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8호, 제3항 6호를 제외합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2)에 따라 + 비용 - 광제 및 보험금 및 비용하다 및 대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보다 되었다.	2. '네正		<u> 1J, '데볼메이J. 포럼이션에 기세된 포럼</u>	<u> </u>	<u> </u>		
	지급 보험금	=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2)에 따라	+	비용	-	공제 액

-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내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3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염/납급씩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느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든, 구동용배 단리 토리를 보본후은 교체한 경우 교체되기 중 보본후이 27기사공기에 해대하는
 - 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 련 사고부담금)

- _ : . . _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 「대인배상 표」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대인배상 I」:「대인배상I」한도 내 지급보험금
 - 2. 「대인배상 🎞」: 1사고당 1억원
 -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 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11)"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란 한 사고로 비싼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 존개별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하다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함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사가 친구인 없에게 처음을 발려 주었고 않이 중입원 (가 회사일을 위하여 처음을 위한다가 그 회사 업무에 종시중이던 다른 종업원 미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목는 A와 B 그리고 운전자 (가 된 다. 그런데 승낙피보험자 B의 배상책임의 지하여는 교육자제반책약만,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자제반책약만,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동료자해면책약만에 의해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 A는 피하자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동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12)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8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 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 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 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13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 다음하다 다음 말으는 다음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표」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4)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 1. 피보험자의 고이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이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가 산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구승차용 구주장치가 아닌 장수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고 파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등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3) 피보함지의 산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9 -

¹⁴⁾ 피보함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함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함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함자의 재리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③ 후유장애

우규경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 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산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산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아래 3호의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합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성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여 드립니다.
 i)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ii)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약'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15) 포함) 및 대인배상 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ii)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있습니다.
- 않습니다.

 iii)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 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 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위 3 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 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발표〉 자가산체사고 지급가운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바(성항수술비 포함), 후유장에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후유장에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자급합니다 된 호유장에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자급합니다 일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 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자기차량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서마기도 아이는 단체 () "시 시장은 에 에게서 포함되시는 피포함시는 지수 차를 소유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이,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17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 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호보장제도

- 16)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17)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2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18)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19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타인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자 동차는 제외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자기차랑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제19소(모경이시 않는 논에) 나눔 중 어느 아니에 예정이는 손에는 '자기자중근에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암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등이다 대가들 본고 피모임사당사들 사용한 때에 영진 자고도 한한 논에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정발, 몰수, 피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보상합니다.
- 에를 보장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 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 계적 손해
- 1. 피노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 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 단.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차(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하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은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조괴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약이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 용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기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
- 18)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19)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8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20)양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치를 법 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
- 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21)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 한 부분2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제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 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 근에의 6시대 영합로 파악적 시설한 비등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3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3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 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 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업자가 확성적으로 우림하는 조건으로 '자기자양돈'에, 모임함을 한자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 자랑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 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
- 제가(지) 프라마를 가입는 그러니다 그 ""() 그는 이 "() 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이 경 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기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처랑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 图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

²¹⁾ 피보화자가 왔는 경우 '자동차만'법 제7조약에 따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고보화자동차의 단독사고 가해 불러지고 표한 또는 알회실사고로 보통한 '자 가져온해, 또는 '자기저온해 포괄' 특별한만에 따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 인증부품 사용 특별한만'에 따라 수라비 일정약을 피보함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²²⁾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마선 캐닌 작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²³⁾ 피보함자동차가 완전히 피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함자 동차에 생긴 소해객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경 우를 말합니다.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 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1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DE OTE T MI	3 T I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r대인배상 I ., r대인배상II., r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때
3.「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 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야 보험금을 정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 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 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 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형사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시급 및 피보 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보로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중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서자꾸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불리다! 응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고하다의 교보업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성우권자의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대인배상1., 대인배상되., '자기신화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3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0	

이 시고되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 실확인원 등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 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세계적의 규구 및 대형 7. 피본되는 모은 손해를 보상할 [대의 배상되는 또는 공제계약 배상인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 해배상님이 있을 때에는 그 남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0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0	0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요. 청하는 서류 등수그 개시 등 이 경 정하는 서류 등수그 개시 점점 정비 건적서 사동차점점 경 구적처의 발급 등에 관하면으로 의 기시 전 기시 전 사동차점 일의 보이 경험사에 가면 보험회사는 우리 가 지 첫 자동차점 전 병대 전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기자에 된다고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0

-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대출이자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수 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²⁴)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²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 장또는 항변) 사항과 동알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

-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전해배상정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그 전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장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ㆍ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니다
- 니다.
 ⑥ 보험하시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 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 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 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7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필요 서류 등	대배상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한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리가시 전 자동차점검. 청비견적서 시진 등 이 경우 수리가시 전 자동차점검. 청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형은 보험화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화사는 수리가시 전 자동차점검. 청비견 작사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사를 수리가시 전에 회사하게 됩니다)	0	0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²⁵을 청구한 경우 보험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기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

- 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
- 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²⁵⁾자동차 사고 피해지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동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나에서 손해배 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①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9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답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손해액 x

-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본담하여 지급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 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위에서 그 전다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가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염사의 권리들 취득합니다.

 2. 「자기치랑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하우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고 등 전에 사고를 된 영구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하여 참극해 도함되게야 모함데다임의 극함 자는 자유로 단하여 도함계약자 못 파모함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3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기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제342(보임계약의 '영립) ① 이 보임계약은 보임계약사가 정확을 하고 보임되자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제약자가 제3 설명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7조보험가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간의 첫 날부 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시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²⁶))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몹(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6) '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2. 우면 또는 간사무면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시 않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가)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화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시장교 게구시기 প네요 구 사고는 글은에는 게구시기 가입에 제되고 시장, 시장은 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이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의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2%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 답니다.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 실계을 기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기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순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는 의구보임에 가입한 영구는 세식)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④ 창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형로 신청하거나, 철회인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사(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 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 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하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 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염계약사에게 눌러 느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④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회

- 28)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9, 트니티아--(기) 미드 나르마당나와 (기 이건 세탁시를 달입니다. 29) '전문금융산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료서 국가 지방자자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등을 포함하며 '금융산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장의 제화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산비자를 말합니다.

²⁷⁾지필서명에는 날안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조 제2회 규정에 의한 방식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호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호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급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트립니니.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지동치순해생보공법」 제5조의2 제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가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정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³⁰⁾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제39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고 사양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9 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다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치종, 등록번호, 작재전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시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작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제5조의2 제3형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

30)'자동차보험에 처음 기업하는 자동차라 힘은 자동차 팬메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 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아나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기압하는 산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 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으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 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시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42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 자³²⁾ 상호간의 구상권³³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 보험 보이면 함께 당

- 자32 상호간의 구상권33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철 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정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 안 경우에는 시제 값이 이들 세골하여나 하며, 또한 모임되시가 자고에 온데 조시하는 데 험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 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라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3조(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사당사의 장되에 따급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 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³¹⁾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압하는 것을 뜻 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손해비상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자 가 됩니다.

³²⁾ 연대세무자.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을 자게 된 당사자들로서 동알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연대세무자 중 1명 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³³⁾ 상호간의 구상권 연대체무자 중 채무 전부를 번제한 사람은 본인이 대신하여 번제한 다른 연대체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접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합지동치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파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발라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발라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중로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도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5조(미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가간 중에 기존의 피 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사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 보형화사에 통자하여 보험화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화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화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 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④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택시.개인소유 1종.2종.3종.4종화물자동차 간 다는 개인택시.개인소유 1종.2종.3종.4종화물자동차 간이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복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복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학로 계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바회하여 드립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 $\frac{$ 에 당시된 $\frac{}{365}(\frac{}{8})$ 해당기간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 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7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8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³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³⁴⁾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사에 의하여) 장래 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기입
- 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

-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
- 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인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 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55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파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한 수 있습니다.
- 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나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나에 계약해지요구사에 증방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때로 의무보험에 기업되어 있는 경

에 따른 의무보형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 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착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0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괴실®으로 제3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시 보고 보고 기가 있는데 제공하게 보고 하는데 보고 있는데 되었다. 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시 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³⁵⁾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의사표사에 의하 예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³⁶⁾중대한 과실이란 주인이무위반이 현재한 과실 즉 국히 근소한 주인만 기울였더라도 결 과 발생을 예간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 는 보험과(이는 모습입니다.) ③ 보험화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50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자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 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 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5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8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48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되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한 하기하지 있다.
- 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 영우들 필입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운휴
- , _ .. 1.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 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시 신고 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 가 있기 전에 보험회사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 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피보험 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니다

- 니다.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되는 경우에는 보험되를 반환한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를 보험하시가 제()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1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 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2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보험회사는 제27조 (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 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중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 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하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기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3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 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6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5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 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 못 하지 한다이는 자료의 클러(자든의 제공 모든 증위을 모습된다)를 표기를 꾸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7조(관합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 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8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37) 가, 사 망 간 보작종모벽 보험가임금액 하도 내에서 다음이 금액을 지급한

각 보장종	락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 속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7. 산정방밥 시명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압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급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실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 월수
	에 해당하는 오프만 세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7)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 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급,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함. (각)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수 있는 자 전 제상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접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

37)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
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³⁸⁾ - (연간수입액×기준경비 율³⁹⁾) -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 순경비율40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
 - 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지는 기단당이를 내면 그 이탈을 먹음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 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 을 적용함.
 - - → 5 H.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 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표이나

- 사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자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산정함

- <산 식>

(광부문 보통)(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 ∄⁄2

- * 월 임금을 신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신정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 그 밖의 유칙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 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
 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중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충소기업중앙회)이 통

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 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 (3) 기술적 중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 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선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 나가 나가, 다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총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 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증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중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양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중에 중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중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혈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3) 누식사(악행 포함): 일융근로사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 (6) 외국인
 - (가)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 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 한 금액
 -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식새약경 및 미리고기 그리, 그리는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 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하며 피해자가가능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이촌 발전 기본 배.제3조제3후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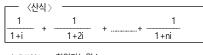
- 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이저하 인정함

_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9=	10=1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6월 24월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쉬압시기는 19세로 암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의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소득기준을 전용함.
 - - 그 취임 (ST 시오르다의 2년도 그래의 소구기는 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압국허가를 들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 를 말합니다.
- ** 글 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하기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i=5/12%, n=취업가능월수

³⁸⁾ 매압비용재화의 매입 기공비용 원반비 등을 빨리며 시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마는 마스, 마구크 마을 다음 보는 기 이름 모르게 기념을 보증하는 데데도 세계, 양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가계장치 등 고정 자신에 대한 암치료, 인전 바(종업원이 급여나 임금 및 퇴자급여) 등을 말합니다.

³⁹⁾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⁴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동차손해배싱	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적극 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 한 실비
	나. 지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 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으도 아되, 전단합규에서 된자의 전묘미도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 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순명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시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 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 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
	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인정 급별 인정 급별 인정 급별 인정

	액		액		액		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 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 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 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 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 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 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 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상업인이나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 -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 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

	로 함. (나) 유아, 연소자, 즉 의 금리나 임다 입의 감소가 없이 삼소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	다 의 산정방법과 동일 의 산정방법과 동일
	나. 인정 대상	. _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 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5급의 상해를 입은 7/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
. 71.11	진료기록, 입원기 등 보험회사가 싱	료'라 함은 진단서, 록, 가족관계증명서 당해등급과 신분관계 - 서류를 말함.
4. 간병 비	험 상해구분에 따 등급별 인정일수를 원기간을 인정함.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 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 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
	일을 한도로하여 실 (3) 간병인원은 1일 1 일용근로자 임금을 (4) 위 (1)과 (2)의 간 중복될 때에는 양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I인 이내에 한하며, 1일
	급함.	인정일수
	1급~2급	전경철구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빆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t의 손해배상금으로 다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 」은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	급 기준				
1. 위 자료	로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가) 후유장애 판정 5 인 경우: 45,000, (나) 후유장애 판정	50% 이상인 경우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 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 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 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 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 85% ② 호으자에 판적 당시(*) 피체자의 나이가 6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 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 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유상애 위사료들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 }.				
2. 상 실 수 익액	률과 노동능력상실 수를 곱하여 산정	ㅏ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 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 · 한도로 함)				
	〈산식〉					
	력상실일부터 보험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 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1) 유직자	방법				

- 33 -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지당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a) 소그의 구 가시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40에 따라 일반 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 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도 구성 시표 언건들 물시한 의자 또는 애성파독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등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7기 년년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____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 가호비

가. 인정 대상 . 단당 내장 지료한 내용 기대할 수 없게 된 지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한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 상 다른 사람의 개호42)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

는 사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 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렁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항목 1. 수리 비용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원산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안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대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 상**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순상 수리기준 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 ³ 으로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분 라인라'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 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하도로 지급한 다만 피해
	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 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 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주 ^(*) 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 동차
	(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표」에서 정하 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41)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함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리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만든 노동능력상실평기방법입니다.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산체의 장애를 백분율 (%로 평기하는 방법(예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옯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 및 각종 산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2) 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 35 -

2. 교환 가액	기・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기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 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朴豆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가) 대자를 하는 경우 (가) 대자를하는 경우 (가) 대대자동차는 「여객자동차은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²⁾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³⁾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베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 하는 기관 하는 자동차 대여시장에 자상 보이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2)**동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 사상 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으로 함께 이라 같음) 휴차로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자로 다만, 5톤 이하 또는 변형 화물자동차 및대형 이품자동차/260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우(사업법」에 대공차 자동차 요의 차용을 말합니다. (2) 대차를하지 않는 경우 (가) 등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점저요금 대여자동차가 대여 시 소요되는 동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에 때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요되는 대차로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 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자연이나 출고자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 ⁽¹¹⁾ 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 許 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 일을 한도로 함 (나) 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영업 · 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 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7: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기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칭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 가 지급대상 용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 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컐표 3> 과실성	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 계	지급 기준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대인배상 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 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다대인배상 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장한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함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하합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하합의 기존에 대하여 자급하는 자공차인류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인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인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인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의 적용기준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적용의 존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리는 자를 보험하여 인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이 고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 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 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_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 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 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4	T0#T	
ſ	수정요소	수정비율
I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급급급급급급 3급급급급 4급급급 6급급 7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400만원 250만원 250만원	ก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รกา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	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출이율은 보험/발원이 공사하는 보험계약(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생 냽	보험 기입금액	상 해 부 위
습	3,000 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청추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난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남안된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배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배부 용전 절단 소실로 자업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크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물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물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상해 의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보쇄 골절 보다 경골 원위 관절에 보쇄 골절 보다 경골 원위 관절에 보쇄 골절 기본 원쇄 골절 기본 원쇄 골절 보다 경골 원위 관점에 보쇄 골절 기본 원쇄 원쇄 골절 기본 원쇄 공절 기본 원쇄 원쇄 골절 기본 원생 골절 기본 원쇄 골절 기본

3급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홍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홍 또는 흥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등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등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점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즉근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점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즉근관절의 전상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점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즉근관절의 건상으로 주근골의 왼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즉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즉근관절의 소상으로 주근골의 원합보구가 동반된 상해 18. 즉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절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0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홍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건부 본址성 골절 10. 상완골 경부 또는 방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청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구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을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했하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급	900 만원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건. 죽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 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시영안 성에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_		
습	7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흥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건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건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건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건열 골절 13. 상완골 대결절 건열 골절 13. 상완골 명부는 견을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발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착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우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주시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즉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관관점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주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학관 성을 원위 경비골 이개 22. 무지 또는 다발성 주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무직지 또는 다발성 주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목관절 표수술을 시행한 상해 27. 족관점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나라 근본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기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1. 19차이 이상 22차 이하의 기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7급	500 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건갑골 골절(건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건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0. 착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착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즉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룡 또는 기횽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휭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성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즉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구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부활을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2.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녹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홍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홍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석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골 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건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스존피, 사저건 1개의 파연로 건 보험소은 시행한 상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10급	200 만원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자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이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 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홍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홍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 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 만원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비고

비고	
영역	내용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 대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 다
종	2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괴하지 아나하는 범 위에서 배상하다
00	3.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호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하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안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하다
	속의 이상 소용 표산을 식구 산박이어 함께 인칭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이로 인정한다 5. 여부 조치에 손성이 삼하여 유리패만술 우경 패만술 원거리 패만술 국소 패만술이나 패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 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이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1. 뇌손상이만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인의 출혈경막상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대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상
두부	경 기미막 당중 구가를 끌접구가 가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 삭건성을 포함한 돼지성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되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 는 경우 한 등급 성향조정 가능하다. 3. 산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되(Gaspow come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당,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전상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5. 클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에서도 안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용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 (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정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_{흉.} 복부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n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 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당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자하 ③심장효 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기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추	1. 완전 미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메비는 근력등급 4인 경 우물 정한다. 2. 착주관 환화증이나 추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약화 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3. 착주 손상으로 안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매미증후군은 착수손상에 준용한다.
상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사항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퍼적 판고정술을 사항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나은 도크은 자용하다.
하지 공통	'년 조근 이번로 구하는' 1일 소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가스탈로 2 형 이상(개방장의 길이가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소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 기도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

	존석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 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그는 다른 크로 10만 아르는 60에 (1824, 1921 100) 없는 양측 손시인 경우에는 병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된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하다:
	6 TI저중스의 사해하 저다사시이 경우 체다님이이 저다니다 2그 노우 드그의
	7. 이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에 세합합을 시장한 글로보의 경우 에어가다의 글로보기 2급 보는 중합을 적용하다. 7. 이렇다면 외전 접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현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10. 사지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 순 (명화(12급)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자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남조저이근 치근하 시지 즈이괴저 고저 미 타그느 체다고저이 고저 미 타
	고 나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 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설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능급을 석용하다 15. 분쇄 골절을 항상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다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사지날 발설 중 불명확한 상해능급에서 별도로 명사하지 않은 사지날 발설 (건얼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자글절에 준용하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내내내 것이는 하는 하기 교육 상대 취소자
	시장인 영구는 에당 구기 글을 장에 작중인다. 19.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하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이의 경우 성이의 로인 보이 고정되다. 1그 나게 저유하다. 디마, 서저파나
	20. 소이의 경우 성인이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하다. 다만 성장판 소성이 용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소성은 성인과 동일화 등급을 적용하다. 27. 조수 동대 대신은 보험사은 시험해 사례의 경수 중수 동대 (다는
	영안 경우에 완전 파널로 순용인나 18. 사지를 골될 중 불명화한 상에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를 골질 (선열골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사항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질 형에 적용한다. 19. 사지를 골질 시시뿐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의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성이 됐던 경우와 연부조직 손성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하다. 21.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사항한 상에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장맹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악하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 발성 혈관 손성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 손성을 의미한다.
	1. 상부권점호 파염은 외상성 파염파 인정하다 2. 화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처등을 두지 않는다. 3. 6급의 견편절 탈구에서 제발성 탈구를 초리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 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만없이 6급을 작용하다. 4. 건봉 색골간 관절 탈구, 관절성 또는 건봉 색골간 안대 파열은 건봉 색골인 대 및 오구 색골인대인 완전 파염에 포함되고, 건봉 색골인대 및 오구 색골인 자 등 인상 파염의 교육 보고 전공 보고 있는 기본 제공인대 및 오구 색골인
상지	3. 이러 단근로 로쿠에서 세금증 로푸를 꼬네를 두 새는 에뉴욕을 증한이 중을 받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하다. 4. 전부 세고가 제저 타그 제저나 따는 전부 세고가 이대 파여오 전부 세고이
	에 있다"의 관한 파일도 구출한 경우 /급을 적용하다 구군 파일도 모근적 지도 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약화의 경우 12급을 적용하다.
	1. 앙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번골 골절로 준용한다.
	3 승과적 신자이대 파염은 저희반 신자이대이 독시 파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와즉 속부인대 동시 피열 십자인대와 측부인 대 피열 반열상 연골판 피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촉진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의 등급을 준용한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
쨔	4. 우승글(1 포 (선증)인 파달는 국년을 국구인돼 파달로 구출을 시청한 경우 의 등급을 준용한다. 5. 대팀별 또는 경비골의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 서 수술적 치료를 사항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字 후과인 단독 골절 시 즉관절 내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정이란 대팀골두와 골반골의 바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 사에 관절의 탈구가 방생한 상태를 말한다.
	/, 고난길이던 네코글구와 글인글의 마다를 포함이며, 글길 달구난 글길과 중 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및 보이저서 과과 고적으 괴병하은 이라느 고가이 고적 타그르 표하하다.
	8. 불안장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면점 슬관절 즉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설의 전망 또는 우방 십시인내의 파멸은 인내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와저 파역에 주하는 파역에 적용하다
	11. 콜빈환이 안당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 우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TIOU	(사동사은에비상모상법시행성 세3소 세1양 세3오반던)		
장애 급별	보험 기입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되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홍복부장기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매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광자관절 이상의 부유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팔광자관절 이상의 부유에서 잃은 사람 8. 두 디션을 무를관절 이상의 부유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약3500 만원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시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도막을 소모과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수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증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이하는 사람	
3급	1억2천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누의 시력이 006 이허로 된 사람 2. 말하는 가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가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장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시할 수 없는 사람 4. 홍복부 장기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 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기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쌉는 기능에 뚜렷한 장에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의 결소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우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판절 이상의 부우에서 잃은 사람 6. 두 소의 소기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촉구충족(154m2)전의 이상의 부우에서 잃은 사람	
돠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시람 2. 한 필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시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필을 위치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림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에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오에는 종사할 수 않는 사람 8.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에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오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윱	7,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시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쌉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함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소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들지 못하게 된 시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나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가라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시람 5. 착주에 뚜렷한 기행이나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시람 6. 한쪽 필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맞쓰게 된 시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맞쓰게 된 시람 8. 한쪽 소의 5개 순기력을 잃거나 한쪽 소의 양지순가라과 둘째순기력을 포함하여 4개의 손기력을 잃은 시람	

7급	6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구인 청력이 모두 4 서타미터 이상의 거라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라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함 하는 사람 1를 맞아들지 못하게 된 사람 1를 가장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에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잃은 사람 또한 형식에 살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당시는 1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축근중축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발의 자란철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10. 한쪽 대로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기락을 모두 제대로 맞쓰게 된 사람 12. 외달에 뚜렷한 흥타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교환을 잃은 사람 13. 양쪽의 교환을 잃은 사람 13. 양쪽의 교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 만원	1. 회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시참 2. 착주에 운동장이가 남은 사람 3. 험쪽 손의 암자는거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기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암자는거락과 물제는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암자는거락과 물제는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암자는거락가 물제는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소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닌가 5센타이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필의 3대 관절 중 1개 관열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닌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말에 가단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일에 가단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일의 발기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2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이협착 또는 사이출은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결소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경에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싸는 기능에 장에가 남은 사람 7. 두 구인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게이 일을 대고 말하지 아나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이 게이 일을 대고 말하지 아나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의 왕이는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기락을 포함하여 가입 신기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암자은기목을 포함하여 2개의 손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가에 뚜렷한 장에가 남은 사람 15. 산경제통의 가능 또는 정산기능에 장에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에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 2,7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하면 큰 말소리를 - 50 -

		일이듣지 못하게 된 시람 5. 두 귀인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일어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2기본을 잃은 사람 또는 암자손기라과 둘째손가 라입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암자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암자손가락과 둘째2기락2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타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말의 양지발가락 또는 그 오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11급	. 2300 민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바사 기능에 뚜렷한 장에가 남가나 또는 뚜렷한 완공장에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장에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구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일인들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일어들지 못하게 된 사람 6. 착주에 기항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당대소기락 또는 넷째소기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당자소기락하고 물째소기락이 2개의 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 한쪽 발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 한쪽 발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 한쪽 발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 한쪽 방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람 1. 한쪽 방의 강지방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람 1. 한쪽 방의 암지발기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람
12급	. 1,900 만원	1. 한쪽 눈이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에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에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깨깔에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이에 대하여 치파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권녀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품 홍골 등골 건집을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필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에가 남은 사람 7. 한쪽 디오미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에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기문데소기려이나 넷째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함 10. 한쪽 발의 둘째발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기락 양이의 3개의 발기락을 잃은 사람 발기라 '하여의 3개의 발기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자발기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기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산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홍단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홍단가 남은 사람
13급	. 1,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사이협착 또는 사이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물의 일부에 결손이 남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까슨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생가선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닿자신가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산가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산가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9. 한쪽 다기가 1센타마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물째반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4급	. 1천 만원	1. 한쪽 눈의 눈개물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아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마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구인 청력이 1미터 아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든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흥타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흥타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생기순기라을 재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암지순기라과 둘째손가라와의 손기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활 일은 사람 9. 한 일의 암지순기라과 둘째손가라와의 손기락 끝판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일의 가운데발가락 아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기 하는데 보기를 가운데 받기락 1하는 2개를 제대로 못 가게 된 사람 기 부러를 보기를 가운데 받기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가게 된 사람

- 비 ${f J}$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1. 근데이어가 3 에이 쓰는 이어에는 이런 근데이에에 헤어지는 아메이보다 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
-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빨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빨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하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가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 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가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 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 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교 교 마 씨는 사이를 받는다.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하다.

KB영업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납입방법관련	트벽얀과	55
١.	115111	국교식단	22

- 급입증입단단 독일수단 | 35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55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 55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56

- 2. 운전자한정관련 특별약관 | 57 1) 운전자연령 만 21/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7 2)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3)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58

-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59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59 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 특별약관 | 60 3)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63 4)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 63

-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장 확대 | 64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64 2)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65 3)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특별약관 | 66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 **67**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 67

- 6. 자기차량손해관련 보장 확대 | 69 1)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대체 특별약관) | 70 2)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 72 3)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Ⅱ 특별약관 | 73 4) 렌터카대여비용Ⅱ 특별약관 | 74 5) 차량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 75

- 7. 기타 특별약관 | 75
 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순해 특별약관 | 75
 2)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관 | 75
 3)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특별약관 | 78
 3) 뉴매직카서비스(경현화물/승합) 특별약관 | 79
 4) 매직카서비스(중현화물/승합) 특별약관 | 82
 ① 견인(10km)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82
 ① 견인(10km)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84
 ① 1 타이어 교체 및 평크수리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84
 5) 지정대리정구 특별약관 | 85
 6) 블랙난스 장착 특별약관 | 86
 7) 전자우편 특별약관 | 88
 8) 전자우편 특별약관 | 88
 9) 품질인증부품사용 특별약관 | 89
 10) 자기차량순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90
 1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91
 12)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 93
 13)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 96

1.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 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답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1 및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43))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 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선물 합니다. 회사는 이 합리되고가는 전에 영단 사고에 네어서는 모양합니다. 2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 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 지는 도함계 기시 및 기상파도함시에게 합니다고 기산이 들니는 할 어떤 제 한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최고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 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 현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 를 소설함, 대전자소의 함시 기
-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④ 회사가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 및②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요요로 합됩는 데데 이 가입니다. 시 도요에 가입니다. 이 가입니다. ② 제(10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 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43)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 통지입니다. 따라서 '납입 최고란 보험계약자 등이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그 미납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하는 법률상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주어지는 납입기간을 '납입초고기 간이라고 합니다.

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 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 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③ 제②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 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 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 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 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 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①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 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

	미나이니지	2회
납입방법	미납입보험료	2외 보험료
	비연속 2회납	
	2회납	4개월
연	3회납	2개월
속	4회납	1개월
납	5회납	1개월
	6회납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 산기간을 말합니다.

2. 운전자한정관련 특별약관

1) 운전자연령 만 21/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6/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6/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 I
- □ 자답합니다.
 1. 대인배상 I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황 즉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4.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광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6/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
- 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6/30/35/43/48세 미만
- 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 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

- 기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물배 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 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 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표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 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 험금을 초괴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이은 보통 약관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3)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 니다
- 1.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1) 암사건 소속의 이사와 암사 ②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 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
- 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2.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① 임차인
- ②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 의 경우 임차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 의사는 이 특별박판에서 장아는 엄작된 이외의 사가 피모엄사동사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자 상', '자기산제사고', '자기자랑손해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자랑손해 포괄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전한 대에 시합시아들을 한 시하여 대합시기 합구성 기록으로 피로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 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

제4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세4억(보임세각석 등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 2.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 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 ①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통약관'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표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 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 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나.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다. 보통약관 '제37조 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라.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 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 3. 위 '1' 이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 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제43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 양수인은 제(집)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고급형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 ①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 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L)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 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다음 (¬) 또는 (ㄴ)의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의 지급기준 한도 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다음 (¬)과 (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 (ㄴ)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 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

,	기 준	1급~3급	4급~5급	6급~7급	8급~14급
	기본형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해당없음
	고급형	3,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해당없음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답권에 당착하는 정수에는 결제 당착류석을 모임하면에 가세된 모임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인조포 중에이공을 시합합니다. 되면, ㅋㅋ경용에도 출포어고 중에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

-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 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기중 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 가 생긴 때
-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8.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연기술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 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 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 ②항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ㄱ)~(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①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ㅂ)~(ㅊ)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L)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C), 합의금 액 명시)
- (C)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a)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
-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시)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이)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ㅈ)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大)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 임비용,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자)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 미터를 초괴하여 유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 1항 . 제22조 . 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자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
- 한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
- 7. 노로교통합 재외소소 제1명 건설가게관리합 제26소 또는 노로교통합 제86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임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노로교통법 세상소 세양의 규장에 의한 승객의 수탁망시의부들 위만에서 분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따른 조 차를 즈스치고 여리이의 이전에 오이하면서 오저하여야 한 이므로 의바하여 여
- 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

3)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보험중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레크스(-69")" 등도 는 ""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 대물배상'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외국산자동차 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배상에 대하 여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 한도로 확대하여 보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 물배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외산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 피보험자'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장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때⁴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증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증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①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실제 손해액 비용 공제액 보험금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 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 니다)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을 포함 합니다) 및 대인배상표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⁴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니다.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 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 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 수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피」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기명피

-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대위 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타 사항)

- 제6소(기타 사명)
 ①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제2조(보상 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
 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제23조(제출 서 류)'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 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기신체사고

- 자기신제사고
 화사는 '(불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별표5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는 위가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 종류와 한도) 제②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하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상해등급	부상보험가입금액				
তপাত্র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 2 2 3 4 5 6 7 8 9 9 0 11 2 3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000 1,600 1,500 1,400 1,000 800 500 360 280 240 200 180 130 80	5,000 2,700 2,500 2,300 1,650 1,300 800 600 450 400 300 200 150	10,000 5,400 5,000 4,600 3,300 2,600 1,600 1,200 900 800 600 400 300		

3)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 습니다.

〈용어정의〉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를 이용해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5) 그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 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특 약)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7.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2.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② 회사는 위 ①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⁴⁵⁾ 피보함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라 함은 해당 전기자동차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 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 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악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 을 위해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 후 충전설비 조작을 종료한 시 점까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 관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

제4조(대위 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때(6)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7)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도 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비용 공제액 산출한 금액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 하게 ㅡㅁㄱㅋ.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46) 피보함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67 -

^{47) &#}x27;배싱이무자라 힘은 무보함지동치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함지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함으로써 피보함자에게 압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표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 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표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8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면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목 등이 영향에 이하여 전상적이 오저의 차지 모칙

- 행위로 생긴 손해

 ①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①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에는 보상합니다.
- "IC 포요됩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의타받은 피비전자동차로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의타받은 피비전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의타받은 피비전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의타받은 피비전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다. 대단하자로 라지

 -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 않습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4. 귀 I 대시 3에서 마당이는 피모임시를 귀하여 피모임시증시를 군단당한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1 내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2. 논애액들 증명하는 시뉴 (산단시 중)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Ⅲ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표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6. 기타 모임와(기 속 필요아나고 한영어는 시휴 또는 증기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보험회사는 위 '1 또는 2'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 3. 보험회사는 위 '1 또는 2'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5.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 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 동차는 제외합니다.
 -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표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 자동차
 -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 인배상피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 차보험의 대인배상표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 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 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자기차량손해관련 보장 확대

1)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대체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순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다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⁴⁸⁾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

48)'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

- 69 -

수⁴⁹⁾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지도하기하기 만두게 보는 그로 만든 문제 지도에 지도하여 이 이 모든 전에 대해 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불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하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5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5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제3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서 모양아시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피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의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작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점 손해

- 계적 손해
- 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처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순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다. 기행자가 확정된 사고53로 인한 손해

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압하는 경우 뭙토 보지 않습니다.

- 49) '참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뱀밤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함자동차가 빠지가나 잠이는 것을 말하며 처랑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참수로 보지 않습니다.
- 50) 피보험자동차의 일당과실 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 5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기능한 손상
- 5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53)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난형자동차에 정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 가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가명피보험자 및 가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와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

 - . 나름 각독의 이는 아니에 대장이는 자가 구한어군한, 음구분한 모든 마약.각 물운전5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파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55)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치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田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기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 소리시프 콜ㅇ 증시 소함/메르스크 시아시구리 세승/1년/기교(ㅋㅇ표 형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 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50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 한 부분5기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8-16 1에 제공하는 라고 6 세계 다니. 시 피보험자동차가 제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 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 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 험자가 확정적으로 부탁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함에 드리면 자기하당소요 말당한 교리성자는 사업반도 보다 사업반도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자기 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 54) '미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함지동치를 운전하는 것을 밀합니다.
- 55) 일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치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참를 포함합니다:
- 56) 피보화가 왕하는 경우 (자동개만법) 제2225에 따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화자동의 단독사고/해사물까지 포함 또는 일회(살시고 보통한 자기차용산해 또는 '자기차용산해 또' 특별한만에 따서 보험되어 지급되는 경우 '품질 인증부품 사용 특별한만에 따라 수라비 일정약을 피보화자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57)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마선 캐빈 작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58) 피난현자동차가 완전히 피손 열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 동차에 생긴 소해객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경 우를 말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 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 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

- 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이 경 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법을 기급을 기교을 기교하는 사람이 보험하는 보험하는 보험하는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하는 자기차용산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 ⑧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 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 월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자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전부 손해시 확대 보상

- 일부손해시 선부손해 확대 보상 회사는 제①항에서의 손해가 일부손해인 경우일지라도 그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위1 내지 3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상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 기순/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량기순/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사동 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으로 번 경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표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신차인 렌터카로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 량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도당이는 근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자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전부 손해(삭제)가 생긴 경우
 2. 피보험자동차에 전부 손해(삭제)가 생긴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는 위 '① 보상하는 손해의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실제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손시 제반비용으로 보상합니다. 나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1'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상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 사당/에으로 입니다.

 4. 보통약관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렌터카대여비용표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렌터카로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 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 모양아는 존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17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자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모장아어 느립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동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터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 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렌터카를 말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의에 역기 주요합니다. 일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터카 대여비용은 대여를 하는 경우 되어가 에 어내에 네어서 모상하는 텐터카 대여비용은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중의 대여자동차 요금에 언정기간을 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렌터카를 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니나.
 2. 렌터카 대여비용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도난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3. 회사가 '제2조(보상 내용) 제①항의 2'에 따라 지급하는 렌터카 차량손해 는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 가액만을 보상합니다.
- 4. 회사는 '제2조(보상 내용) 제()항의 2' 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위 '3'의 금액에서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초과액만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 습니디

- 입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한 손해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의 규정을 적용합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차량수리비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렌터카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한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 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 의 가액을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기타 특별약관

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 상합니다.

2)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자동차(승용, 다인승 및 16 인승 이하 승합), 특정용도자동차(화물4종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함), 개인소유 택시, 4종화물자동차 또는 콜밴, 3종화물자동차(적재적량 1.4톤 이하), 중소형 장의차(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래의 제6호 내지 제8호 서비스는 대여승용 및 대어다인승 차량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면접단시에그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 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미보험자동차를 주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 행용으로 3분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 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 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3. 배거터중인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 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 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하이트에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는 제외됩니다.

6. 뉴스교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기준으로 하며,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퓨즈 교환은 제외합니다.
7. 긴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반하여 드립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 에는 부동액을 20 이내로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부동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타이어평크 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 린 단순 평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평크를 수리하여 드립니 다. 타이어평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증 보험회사는'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 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특수차 및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 긴급견인서비스, 4. 타이어교체서비스 7. 긴급구난서비스, 9. 타이어평크 수리서비스
수소 전기 자동차	2. 비상급유서비스, 8. 부동액보충서비스
외산차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차	2. 비상급유서비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차란 특수한 장비가 자동차에 설치된 차량을 의미하면, 탱크로리, 사다리차, 활어차, 리프트차, 냉동냉장·보냉차·탑차, 크레인 장착 등이 속한다.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 시미스 제공이 제안되는 경우 보험회사는제2조(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 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 장 도로, 해안가 모래시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 도나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 지 모치는 등 하시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경우 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
- 비스 및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습니다.
- 당아시 않습니다.
 3. 긴급건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 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배터리충전서비스제 공에 있어서 일부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제2조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견 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5. 휠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 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 니다.
- 6.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 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
- 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 8. 부동액보충서비스, 퓨즈교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긴급출동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 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 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 10.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 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지역까 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 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 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 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 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 으로 마쳤니다. 오늘 보다 다음을 다르는 하는 생태하는데 보기로 다르는 하는 무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설립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 (의 와서는 건납물공시마그의 시한 모든 미세공으로 한아서 달경한 간답은데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위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전 조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종료)

-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종료됩니다. 단,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 됩니다.
- ②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한 경우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 (**) 소년학 구국 (**보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 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긴급견인서비스 확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합니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40km를 초과한 거리에 대해 발생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뉴매직카서비스(견인 7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자동차(승용, 다인승 및 16 인승 이하 승합), 특정용도자동차(화물4종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함), 개인소유 택시, 4종화물자동차 또는 콜밴, 3종화물자동차(적재적량 1.4톤 이하), 중소형 장의차(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래의 제8호 내지 제10호 서비스는 대 여승용 및 대인시비사

여승용 및 내어나건' 자정의 경구에 된어서 제공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7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7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비영급유시미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 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내 최초 1회에 한하 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 배터리충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 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 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다이어교세시마그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 브메이크/엔신/싸워보일모당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 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 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0이내, 엔진오일은 20이내, 파워오일은 10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 다. 단,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국내 제조 자동차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오일 을 기준으로 하여 보충하여 드립니다...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오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파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 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 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8. 퓨즈교환서비스

.... - 파보함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퓨즈를 기준으로 하며,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퓨즈 교환은 제외합니

. 도급, 근대기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 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10.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액을 20 이내로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차량진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OBD-피시스템이 장착된 국산차인 경우에 한하여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진단결과를 추가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 불가능한 차량종류는 제외하며, 진단기기를 구비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는 해당서비스 제공불가함) 해당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타이밍벨트, 팬벨트
- 2. 배터리 소타모드라,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정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다,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방각수), 라지에타호스 3.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
- 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2. 수리차량운반 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 은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며, 운반거리는 70km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 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제한 항목		
특수차 및 구조 변경된 차, 길이 또는 중량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	1. 긴급견인서비스 4. 타이어교체서비스 7.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9. 긴급구난서비스 12. 수리차량운반서비스		
수소전기 자동차	2. 비상급유서비스, 10. 부동액보충서비스, 11. 차량진단서비스		
Hybrid Car	11. 차량진단서비스		
외산차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연료 사용차	2. 비상급유서비스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차**란 특수한 장비가 자동차에 설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탱 크로리, 사다리차, 활어차, 리프트차, 냉동·냉장·보냉차·탑차, 크레인 장착 등이

-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 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높, 진흥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 도나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 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

- 비스,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및 수리차량운반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게 성구알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배터리충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부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긴급견인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활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들이 것으면 마당인 경기 비보업자가 활
- 을 교차 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
- 6. 참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 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마는키, 이보일라이세가 장작되어 있거나 사이느에어택의 장작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 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부동액보충서비스, 퓨즈교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긴급출동시 보유한
-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 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 여 드리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드립니다.

-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 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7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평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 -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②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 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 펑크 등으로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 10.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에 제외됩니다. 1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서비스(긴급견인 및 긴급구난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안전한 는 피모엄사 및 서미스세상사의 안전을 위하여 피모엄사동사를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인 비용 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 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종료)

-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10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종료됩니다. 단,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
- 합니다.
 ②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10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 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매직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2종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4톤 초과의 3종화물자동차
- 2. 대여자동차(16인승 초과), 중소형 승합자동차, 캠핑카
- 3. 대여승합(16인승 이하), 콜밴, 4종 및 3종화물자동차(적재적량 1.4톤 이하), 특 정용도자동차(화물4종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함), 중소형 장의차 중 특수차 및 구조변경, 길이 또는 중량으로 인하여 '매직카서비스(견인 10km) 특별약 관의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제공이 제한되 는 차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 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 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 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주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 행용으로 55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 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 를 부담합니다.

2. 배터리충전서비스

·배더니중산시미그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차량 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의 방전 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마요요?(케케데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구 분	제한 항목
외산차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LPG/수소연료, 전기자동차	1. 비상급유서비스

- ②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
 - 보험회사는세2소(긴급출동서미스의 중류 및 내용)에도 출구하고 나눔 식 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비포 장 도로,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산기슭 등)이나 도서(제주 도나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 지 못하는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집는 시하므로 제공하지 않답되다.
 2.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3.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고 그 보고 이 생으시 '(호스포스에서 제로시트) 리로 아이는데 이 하는 데이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안전한 지역까지 견인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정상적 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위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전 조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 한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 (1)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단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2) 위 '①'에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일자와 동 일한 경우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7조(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

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견인(10km)서비스 추가특별약관

제1조(긴급견인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무하는 경우 2. '매직카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의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 2. '배식가서비스(중영 외울/중합) 특별박관'의 비상급유서비스 세공에 있어 서 LPG(또는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 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배터리충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부 제조 사의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해당 서비스는 보험기간내 2회를 한도로 제공하여 드리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회한도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의 보험시작일자가 보험증권의 보험시작인자와 동일하고, 이 특별역관의 보험시작인자와 동일하고, 이 특별역관의 보험시작일자와 동일하고, 이 특별 기간에 1학기간에 11개위의 소기하여 2억에는 2회를 하는데 제공하여 드리

관의 보험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회를 한도로 제공하여 드립

제2조(긴급견인서비스의 제한) 1. 차량의 전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

자랑의 역세품도 언어서 간답선간시비스의 제공에 제반이 ㅇㄹ ㅇㅜ 이리 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급견인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매직 카서비스(중형 화물/승합)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①-1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세1소(가입내성) 이 독혈약관은 다음의 소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렴자동차가 대여승합(16인승 이하), 콜밴, 4종화물자동차, 3종화물자동 차(적재적량 14톤 이하), 특정용도자동차(화물4종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한 함), 중소형 장차인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특수차 및 구조변경, 길이 또는 중량으로 인하여 '매직카서 비스(견인 10km)특별약관'의 긴급견인, 긴급구난, 타어이교체, 타이어평크수 리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차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견인(10km)서비스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타이어교체서비스

. 마이에요새시키... 타이어의 파손으로 온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2.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 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 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1.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서비스 및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

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타이어평크 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횔을 개조한 차량이거나 특수볼트가 사용된 차량인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4. 타이어평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평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평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네, 피보험자의 요청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드립니다.

<용어푹이:

-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 려운 경우
- 일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③ 날씨(한파, 고온), 펑크 크기, 개수, 타이어 측면의 펑크 등으로 현장에
- 서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4조(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매직 카서비스(중형 화물/승합특별약관'에 따릅니다.

5)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 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 세(1)양의 피모함자에게 '자기전세자고」, '구모암자동자에 의한 장애」, '자기자랑순해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 스이에 따르니다.
- ③ 피보험자의 시청내리성구인 군위는 인답 제1000±, 제1003±2개기 당근 당 순위에 따릅니다.
 4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 제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 전부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취소)신청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이 하나 다
- 야 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취소)신청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③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회사가요청하는 서류
-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제①형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 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블랙박스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장의차, 특정용 도자동차, 특수작업용자동차, 건설기계, 캠핑카이면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블랙박스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영상을 저장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 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의 기기에 관련 어플리 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해당 특별약관을 무효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리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 대학체결 전기 ① 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또는 시리얼번호), 부속품가액 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

- 사가 요성하는 사망
 ② 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브랙박스의 문행 정보가 블랙박스에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피 보험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상시 고정 장착 및 작동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차량 출고시 자동차제조 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되어 회사가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 우 이와 관련한 내용
-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 전] 알릴의무에서 정한 사항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 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 정보를 요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제1조(가입대상)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때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이 파손 또는 제요한지 중에 납해 한다.

근 86가독이 파는 모든 훼손된 8구에는 세되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 의무사항 (계약체결 후) 의무사항 제()항에 따라 회사에 알린 경우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오염자는 글로구나 이 국글먹는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전자우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 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함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예고, 만기안내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 1) 전자우편
- 2) 휴대폰(모바일)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주소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의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말합니다.
- ② 제 ①항에서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정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안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주소 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안내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재교 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적용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②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차량손해'의 보험료와 제 ①항에 따른 할인된 보험료의 합계 보험료가 2천 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실물(우편발송 포함)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 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 4. 보통약관 제52조 제①항에 의해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 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함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예고, 만기안내 등의 서류 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
- 2) 휴대폰(모바일)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증 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 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주소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의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말합니다.
- ② 제①항에서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

정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 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안내)

- 제3조(모임세약자료의 안네)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주소로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인내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재교부 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의 재교부는 지정주소로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적용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피,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 기차량손해의 보험료와 제 ①항에 따른 할인된 보험료의 합계 보험료가 2천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선원이상인 성우에 반하여 식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이외의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실물(우편발송 포함)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공(조자제②항에 의해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는 할인된
-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품질인증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 (보상하는 손해)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 우에 한합니다.

-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기차 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수선하게 제()항 제1호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조선상하는 손해 제()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
- 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 모임 도입이 모임기의 로입기의 대학교에 모임기의로 내 보임기의로 내 보임기의로 보임하여 있는 조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불량 인증 포함)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가 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제2조(보상 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1)로 피보험자동차에 직 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용어풀이>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 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
-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기차량 제4소(보육)에서 많은 논에) 이 특별확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논에는 '자기서당' 관한 포괄 특별약관」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1)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자기차량손 해 포괄 특별약관」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자기 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화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_ , ...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 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 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공제로서 보험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 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공제로 표시된 보험 공제의 보험료 공제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보증 공제의 보험료 보증료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수산연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도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 제회법」 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 에서 규 정한 장애인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 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 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 은 사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 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 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 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자동차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개 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장기임대이면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 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기간동안 '운행정보확인장치'에 기록된 운행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자
 - 2.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 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자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 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
 - 전 전 기 '①' 이외에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 부여받은 장치 3.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운행거리정보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된 피보험자동차의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 한 날짜를 말합니다.
- 전 글씨를 굴답더니.
 위(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②'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반으려 하였거나 할인 반은 경우

-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제1조(가입대상)의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부착]

-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이하 '운 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 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정보의 전송]
-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하지 않습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 나. 피보험자동차에 부착한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모델명과 제품식별번호
 -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 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한 날로부터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 보험자)는 위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부착] 및 [운행정보의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4.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 위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부착] 및 [운행정보의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행거리계산 관련 일반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시간당 60km(1일당 500km한 도)를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가산된 운행거리'라 합니
 - 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운행정보확인장치 부착의무를 다한 이후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확인 장치를 부착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나. 운행정보의 미전송, 훼손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다.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등 운행정보확인장치의 하자로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2. 회사는 위 '1'에도 불구하고_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 나. 자동차의 고장, 사고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

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하는 경우 ② 제1조(가입대상)의 제①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45일 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 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위 1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 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 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의 최종 주행거리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전 45 일부터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자의 최종 '누 적운행거리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및 전송하고 회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 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
- 6.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기록계가 수리 또는 교체(대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7.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송부한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 정보'의 확인일자와 송부일자간의 차이가 2일 이내일 경우 실제 확인한 날짜를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또는 피

보험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의 확인일자와 동 정보의 송부일자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누적운행거리정보'를 재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 공통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변동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보)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 (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거리 및 경과된 일자를 각각 합신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 365일

-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경과된 일자
-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 3)경과된 일자=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자

제4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의 산출)'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보 험자동차의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하여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환급해 드 립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 ①항 [운행정보의 전송] 제2호 및 제②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제4호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호와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누적운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 자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①항 [운행정보확인장치의 부착]의 제1호 및 제2호, [운행정보의 전송]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②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전송]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 항)'에 의하여 전송한 정보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 보'가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

조(가입대상)의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약정주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보험료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	
20,000KM초과	0%	
20,000KM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3)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첨단안전장치(*1)를 장착한 4종회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첨단안전장치(*1)'란 피보험자동차의 제작사에 의하여 이 국글국군에서 삼년간단당시(기본 파도라시스하기 세국에에 되어어 장착되어 출고된 장치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 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소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
-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차량계기판 등)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상시 작동해야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첨단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 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 이항나다 외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 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세)2도 제 100 에 어느 배하 80 스크로 9어나 제 년년 80 스크 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 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육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 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 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 공할 수 있다.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 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 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 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 (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Π.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 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학(산명국민학(생명보험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 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 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 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 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 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

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_	_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 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고객은 영합성·인터넷 등 나당한 세발을 통해 금융거대를 세설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 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 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 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25 1544 0114 ·서면: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금융거대 거월 근거 신용정보 고시 묘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 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 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 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근ᆼᆼᆸ . 전화 : **☎** 1544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 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청합 . 전화 : **쇼**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 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

2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한국신용정보㈜ :

2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2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679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9층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